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. 12. 4 선고 2024가단10976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4. 12. 4.

주 문

1. 피고와 소외 C 사이의 별지 '부동산의 표시' 기재 각 부동산 중 2/11 지분에 관하여 2020. 4. 16.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'부동산의 표시' 기재 각 부동산 중 2/11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와 2020. 6. 3. 접수 제624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신혁재

별지